

공 보

제694호 2019. 4. 24.(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9-42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19-43호 도로명주소 고시 4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9-526호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거창군 공고 제2019-529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 ... 23

거창군 공고 제2019-530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25

거창군 공고 제2019-531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33

거창군 공고 제2019-534호 공시송달 공고 41

거창군 공고 제2019-535호 보상계획 공고 42

거창군 공고 제2019-541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43

거창군 공고 제2019-542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45

거창군 공고 제2019-546호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인가 공고 47

회 계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지방세법 제112조 및 거창군 군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거 창 군 수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읍면동	면 적(m ²)	적 용 대 상 지 역
합 계	31,906,464	거창읍·웅양면·마리면·남상면·가조면 일부지역
거창읍	26,767,975	상림리·중앙리·대동리·대평리·김천리·송정리·장팔리·정장리·동변리·서변리·가지리·양평리·학리 일부지역
웅양면	2,773,000	죽림리·동호리·산포리·노현리 일부지역
마리면	455,000	하고리 일부지역
남상면	1,016,754	대산리·월평리 일부지역
가조면	893,735	대초리·일부리·마상리·수월리 일부지역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24.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양2길 22 등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263-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251-8	2009-07-02	2019-04-24	지명(덕유산+월성계곡)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355-4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1210-24	2009-07-02	2019-04-24	주상면의 옛지명이 반영 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양2길 22	2009-04-01	2019-04-24	영천강가의 양지 바른 곳이라하여 불려진 강양마을의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 12-3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창길 5-12	2009-04-01	2019-04-24	하고리의 높은 재위에 있는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5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1052-6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엄대1길 149-47	2009-07-02	2019-04-24	마을 뒷산이 엄정하게 뽀여내려 대와 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5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2길 44-10	2009-07-02	2019-04-24	장팔길의 시작점으로 부터 분기되는 두번째 도로	

거창군 공고 제2019-526호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거창군수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 변경사항 반영
- 나. 더욱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거창군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 신설(안 제4조)
- 나.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신설(안 제5조)
- 다. 구상에 대한 이의 조항 신설(안 제6조)
- 라.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안 부칙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안전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다. 우편번호 : 51032, 전화/팩스 : 055-940-3633/3629

이메일 : eyandey@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5. 입법예고문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자치법규명 :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 ~
----------	--------

제출일자	2019. 4. .
제 출 자	안전총괄과장

1. 제안 이유

- 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 변경사항 반영
- 나. 더욱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거창군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 신설(안 제4조)
- 나.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신설(안 제5조)
- 다. 구상에 대한 이의 조항 신설(안 제6조)
- 라.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분석의뢰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 중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거창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중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에게”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1항, 2항, 4항의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5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하고, “제5조”를 “제7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본문 중 “제6조제5항”을 “제8조제5항”으로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제20조·제21조), 별표 7,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제3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거창군수가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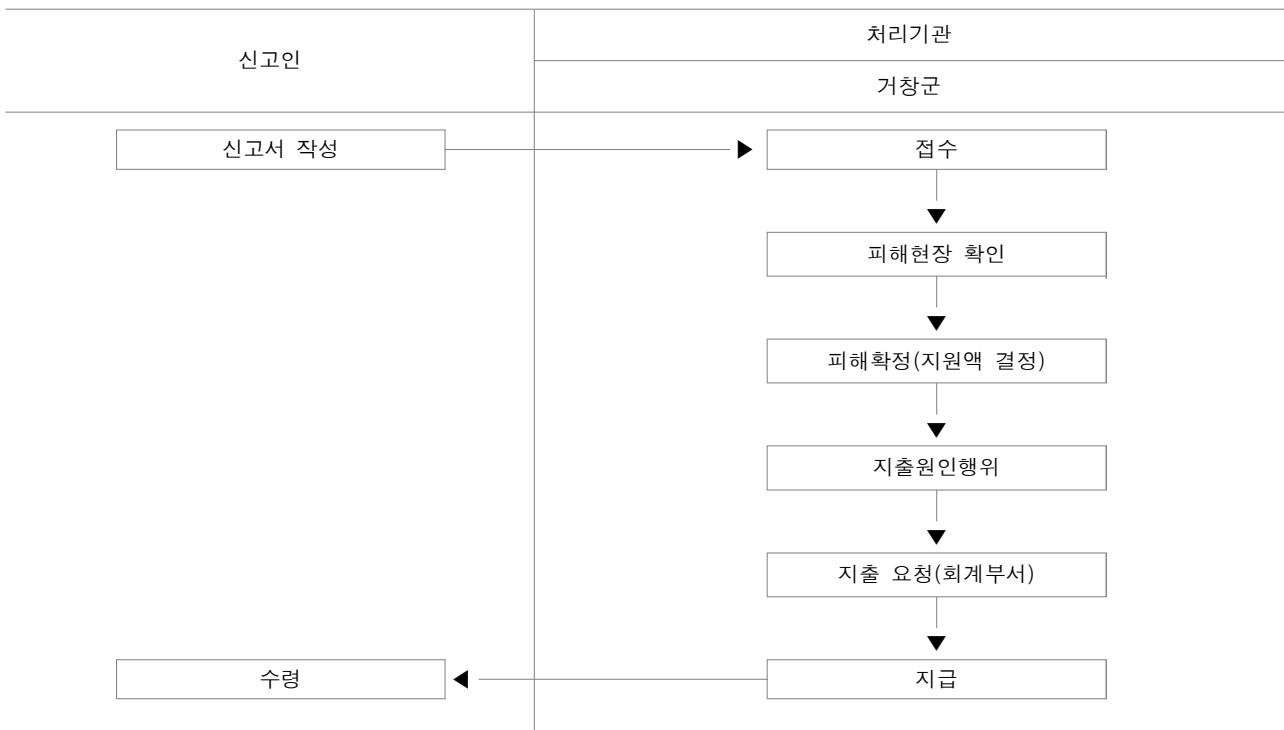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결정)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u>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4.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u>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u> 확정한다.</p> <p><u><신 설></u></p>	<p>제3조(지원결정) ① ----- ----- <u>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 ----- -----</p> <p>제4조(지원기준) ① ----- ----- <u>피해주민</u>-----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u></p> <p><u>5. (현행 제4호와 같음)</u></p> <p>② ----- ----- ----- ----- ----- ----- ----- <u>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u></p> <p><u>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u></p> <p><u>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u></p> <p><u>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u></p>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 라 한다)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이자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거창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 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피해주민에게

----- 원 인 제 공 자 가

-----.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
피해주민은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④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 8. (생략)

제8조(지급방법) 군수가 제6조제5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피해주민이-----

-----.

1. 2.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해주민이 -----
-----피해주민의 -----

-----.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
-- 제8조제5항-----

-----.

1.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지급방법)-----제8조제5항에
----- 피해주민에게 -----
----- 피해주민 -----

----- 피해주민의 -----
-----.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신 설>

제11조(환수)-----제8조제5항에 -----

-----제7조를-----

--.

부 칙

제3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產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거창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

거창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20.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	15	보조 간선 도로	1,065	중1-10	중2-14	일반 도로	셋별 중교	건고194호 (’76.12.7)	
변경	중로	2	10	15	보조 간선 도로	534	중1-10	소1-74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2	77	15	보조 간선 도로	365	소1-74	중2-14	일반 도로	셋별 중교	-	
신설	소로	1	74	10	국 지 도 로	220	중2-10	중2-77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84	8	국 지 도 로	511	중1-10	중2-10	일반 도로	-	경고103호 (’78.3.20)	
변경	소로	2	84	8	국 지 도 로	527	중1-10	중2-77	일반 도로	-		

나.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10	중로2-10	○노선 축소 - 폭원 : 15m - 연장 : 1,065m→534m (감 531m)	○지장물 저축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도로선형 유지를 위해 개설이 곤란한 지역을 제외하여 선형을 변경함에 따라 노선을 분리하여 축소 변경함
	중로2-77	○노선 분리 및 도로명 부여 - 폭원 : 15m - 연장 : 1,065m→365m (감 700m)	○지장물 저축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도로선형 유지를 위해 개설이 곤란한 지역을 제외하여 선형을 변경함에 따라 노선을 분리하고 도로명을 부여함
-	소로1-74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220m	○지장물 저축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로2-10호선 및 중로2-77호선과 연계한 노선을 신설함
소로2-84	소로2-84	○노선 연장 및 선형변경 - 폭원 : 8m - 연장 : 511m→527m (증 16m)	○중로2-77호선과의 원활한 접속을 위하여 노선을 연장하고 선형을 변경함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4. 의견 제출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
5. 관계도면 : 실음 생략(열람장소 비치)
6.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로 문의바랍니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2. 개정이유
 - 시장기능이 상실된 위천시장을 폐지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천시장을 삭제함(안 별표 1)
 - 나. 용어를 정비함(조례 전반)
 - 1) 대상 : 사용, 사용료 ⇒ 이용, 이용료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4. 19. ~ 2019. 5. 10.(21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경제교통과

- 전화번호 : 055)940-3683, FAX : 055)940-3349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거창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거창군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을 “거창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로 한다.

제2조 중 “거창군”을 “거창군이 개설한”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용신청) ① 시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 시설 이용을 신청 해야 한다. 다만, 노점을 이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조 제목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 제한)”을 “(이용취소와 이용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장사용 허가”를 “시장 시설 이용”으로 “시장사용”을 “시장 시설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이용 신청을 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5조 조 제목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용자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을 사용하는 자”를 “시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사용하는 자”를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사용하는 자”를 “이용자”로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사용하는 자”를 “이용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조 조 제목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을

“이용”으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사용료 반환)”을 “(이용료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8조제1호 중 “사용료”를 “이용료(또는 이용료 및 사용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위천시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2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u>거창군 공설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3조(사용허가) ① <u>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다만, 노점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제4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u>시장사용 허가</u>를 취소하거나 <u>시장사용</u>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u>사용허가</u>를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u>사용자</u>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p>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u>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u> 하며, 시장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u>하여서는 아니</u> 된다.</p> <p>② <u>시장을 사용하는 자는</u>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u>거창군이 개설한 공설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3조(이용신청) ① <u>시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 시설 이용을 신청</u>해야 한다. 다만, 노점을 이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제4조(이용취소와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u>시장 시설 이용</u>을 취소하거나 <u>시장 시설 이용</u>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u>이용 신청</u>을 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u>이용자</u>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p>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u>시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u>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u>해야</u> 하며, 시장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u>해서는 안</u> 된다.</p> <p>② <u>이용자</u>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p>

- ③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일액으로, 시장 개장일에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장현대화 사업,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용허가 취소를 신고한 경우

제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사용료의 징수
 2.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이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④ 이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이용료) ① 시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입해야 한다.
 ② 이용료는 일액으로, 시장 개장일에 받는다.

제7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장현대화 사업,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이용료의 징수
 2.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삭 제>

[별표 1]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비고
가조시장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110-13 일원	
<u>위천시장</u>	<u>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47-1 일원</u>	<u><삭 제></u>
신원시장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2-4 일원	

관 계 법 령

지 방 자 치 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44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2018. 12. 12.)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규칙 전반)
 - 1) 이차보전 ⇒ 이차지원, 이차보전금 ⇒ 이차지원금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4. 19. ~ 2019. 5. 10.(21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경제교통과

- 전화번호 : 055)940-3683, FAX : 055)940-3349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 제목 “(이차보전 지원 신청 절차)”를 “(이자지원 신청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를 “이자지원을 받고자”로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차보전 지원”을 “이자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아차보전 지원”을 “이자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이차보전금”을 “이자지원금”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이차보전 지원”을 “이자지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이차보전”을 “이자지원”으로 한다.

제5조 중 “이차보전금 지원”을 “이자지원”으로 “군”을 “거창군”으로 한다.

제6조 중 “융자를”을 “이자지원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목 중 “이차보전”을 “이자지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이차보전 지원 신청 절차) 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u>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u>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u>군수</u>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상공인 <u>이차보전 지원</u>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그 밖에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p>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u>통보하여야</u> 하며, <u>이차보전 지원</u> 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p> <p>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u>이차보전금</u>의 지급을 군수에게 <u>신청하여야</u> 한다.</p> <p>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u>이차보전금</u>을 취급 금융기관에 <u>지급하여야</u> 한다.</p> <p>제3조(협약체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u>이차보전 지원</u>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p>제4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u>이차보전</u>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p>	<p>제2조(이자지원 신청 절차) 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u>이자지원을 받고자</u>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u>거창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u>신청해야</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상공인 <u>이자지원</u>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그 밖에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p>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u>통보해야</u> 하며, <u>이자지원</u> 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p> <p>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u>이자지원금</u>의 지급을 군수에게 <u>신청해야</u> 한다.</p> <p>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u>이자지원금</u>을 취급 금융기관에 <u>지급해야</u> 한다.</p> <p>제3조(협약체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u>이자지원</u>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p>제4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u>이자지원</u>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p>

제5조(지원대상자 심사)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자의 심사 순위는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납부 금액), 사업체 최초 등록일자, 군 거주 연수 순으로 한다.

제6조(변경사항 통보) 용자를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심사) 이자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자의 심사 순위는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납부 금액), 사업체 최초 등록일자, 거창군 거주 연수 순으로 한다.

제6조(변경사항 통보) 이자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삭 제>

거창군 소상공인 이자지원 지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소재지)				
사업장 규모		점포면적: 제곱미터	소유여부: 자가, 임차		
		업종 및 업태:	상시종업원: 명		
용자금 대출(신청)현황		대출일자: 년 월 일			
		취급은행:			
		용자종류: <input type="checkbox"/>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input type="checkbox"/> 경영안정자금			
		용 자 금:		원	
		대출기간:		년(거치기간)	
		대출금리:		연 퍼센트	
위와 같이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이자지원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거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이미 대출한 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이자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사업완료 시 1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를 군으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거창군 소상공인 융자금 ~~어차보전금~~ 이자지원 신청내역

(단위: 퍼센트, 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소재지	대출액 (대출잔액)	대출일자	대출금리	이자상환일	이자상환액	어차보전율 <u>이자지원율</u>	어차보전금액 <u>이자지원금액</u> (연체제외)	비고 (전화번호 등)
계												

거창군 소상공인 융자금 어차보전금 이자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인)

거창군수 귀하

관 계 법 령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018.12.12.)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2018.12.12.)
3. "이자지원"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2018.12.12.)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창원지방법원 2018아1126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거 창 군 수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2.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송달주소	납부금액
주식회사 **대리석	전북 군산시 상지곡안 2길 **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48길 **	3,110,230원

3. 공고기간 : 2019. 4. 24. ~ 2019. 5. 8.(14일간)
4. 공고장소 : 거창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 유의사항
 -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2019. 5. 8.(수)까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공시송달의 경우 그 서류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7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상 계 획 공 고(안)

거창군에서 시행예정인 「아카데미 파크웨이(소로2-79호선 외1)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2019. 04. 22.

거 창 군 수

1. 사업계획

가. 사업명 : 아카데미 파크웨이(소로2-79호선 외1) 조성공사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일원

다. 사업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10.0m, B=8.0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3. 보상시기 : 별도 보상통보

4.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여 현금 지급한다.

(감정평가 업자선정 : 사업시행자가 2인 선정, 토지소유자 추천시 별도 1인선정)

5. 보상절차

가) 토지 : 보상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 징구 후 보상

나) 지장물 : 철거후 보상금 전액 지급

6. 보상계획 열람기간 : 신문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보상계획 열람장소 :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940-3593)

8. 이의신청 : 열람장소에서 서면 제출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4. 23.

거 창 군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4. 23. ~ 2018. 05. 13.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가. 조은 태양광발전소 ⇒ 연준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8 -005호)	발전소명	조은 태양광발전소	연준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공 영 속	김 찬 길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1길 118, 402호(용산동)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36-16, 102호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358, 359-2 (토지 위)	
	설비용량	99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8. 01. 10.	
	양수(예정)일	2019. 04. 23.	

나. 내동1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도인	양수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8 -007호)	발전소명	내 동 1 태양광발전소	
	대표자	이 용 기	김 명 지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105동 4401호 (온천동, SK HUB SKY)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33, 402호 (신우빌라)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56-1 (토지 위)	
	설비용량	99.4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8. 01. 10.	
	양수(예정)일	2019. 04. 23.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함양-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거창군 1차, 19수용0319』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 4. 23.

거 창 군 수

- 사 업 명 : 함양-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거창군 1차, 19수용0319
-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 열람기간 : 2019.4.23.~2019.5.8.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거창군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055-940-3534
- 의견제출기간 : 2019.4.23.~2019.5.8.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상남도 신원면 구사리 1431-5 총 1필지(60㎡)
- 토지소유자 : 농업회사법인 용* 주식회사(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431-2)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번 (당초)	지 목	현 실 적 이 용 상 황	전 체 면 적	편 입 면 적	용도 지역 및 지구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431-5	목		60㎡	60㎡	보전관리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인가 공고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인가 고시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4. 23.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9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건설기계 주기장
 - 명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거창읍 중앙로 103(거창군청) 거창군수(건설과)
4. 사업규모
 - A=6,310m²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9. 3. 18. ~ 2019. 5. 1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 붙임과 같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토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성명
합계					6,310	6,310	
1	거창읍	정장리	394	도	4,950	4,950	거창군
2		정장리	394-1	도	18	18	거창군
3		정장리	394-2	도	429	429	거창군
4		정장리	394-3	도	913	913	거창군